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2004. 12. 22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 및 학생(이하 “교직원 등”이라 한다)의 창업 보육, 지원 및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보육”이라 함은 벤처기업 창업준비자 또는 창업자에게 시설 또는 연구실 제공, 자금알선, 경영·기술·세무에 관한 상담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센터입주자”라 함은 센터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교내외의 벤처기업 창업준비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3. “졸업”이라 함은 센터입주자가 창업보육지원에 의하여 계획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4. “창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한다.

제 2 장 창업보육센터

제 3 조 (조직) ①센터에는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단장이 본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하여 임용한 직원을 소장으로 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센터에는 직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 4 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직원 창업 지원
2. 교내 실험실 창업 지원 및 육성
3. 학생 창업지원 및 창업동아리 지원
4. 유망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5. 육성 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마케팅, 세무 등의 종합 지원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6.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창업보육센터 발전기금 유치 및 벤처기금 운영 지원
8. 기타 창업보육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 5 조 (산학협력추진위원회) ①산학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방향 결정
2. 센터입주자의 심사, 졸업 및 퇴거
3. 본교의 창업관련 정책수립
4. 교직원 등의 창업지원 여부 및 평가
5. 창업 교직원 등의 교육·연구의 공백에 대한 적절한 조치
6. 의무 위반 교직원 등에 대한 징계 조치
7. 창업 교직원의 겸직 연장
8. 기타 교직원 등의 창업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

②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창업지원

제 6 조 (창업지원대상) ①교직원 등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창업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창업을 한 교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기업이 청산된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창업을 할 수 있다.

제 7 조 (창업지원의 절차) ①창업지원을 희망하는 교직원 등은 창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창업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창업기술
2. 창업활동개요
3. 창업 후 본교가 지원하여야 할 시설, 인력, 장비 등
4. 창업할 경우 본교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
5. 창업활동으로 인한 교육·연구 공백에 대한 조치내용
6. 기타 본교에 부담이 되는 중요사항

③단장은 교직원 등의 창업지원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창업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 8 조 (협약체결) 창업지원결정을 통지받은 교직원 등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9 조 (창업 교직원 등의 신분) ①창업지원을 희망하는 교직원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겸직 또는 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며, 창업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휴학을 신청

할 수 있다.

②총장은 겸직, 휴직 또는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겸직 또는 휴직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겸직의 경우 위원회에서 학교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재학생의 휴학기간은 본교 학칙에 따른다.

제 10 조 (창업시기) 산학협력단과 창업지원협약을 체결한 교직원 등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센터입주지원

제 11 조 (입주) ①센터에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내에서 6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단장은 입주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입주 여부를 결정한다.

제 12 조 (입주계약 체결) 입주 승인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산학협력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입주자의 시설이용) 센터입주자는 정하여진 범위 안에서 본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14 조 (입주자의 부담금) 센터입주자는 연구실 또는 시설의 사용료 기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입주자의 중간평가) 소장은 센터입주자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업 경영 현황
2. 기술 개발 상황
3. 기타 소장이 중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6 조 (졸업에 의한 퇴거) ①센터입주자가 계획된 기술개발을 완료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하여 졸업하는 경우에는 입주기간 만료 이전에 퇴거할 수 있다.

②졸업자에게는 센터의 졸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17 조 (계약해지에 의한 퇴거) 센터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하게 할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정한 바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입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창업보육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5. 센터에 불이익을 가한 경우
6. 기타 센터에의 입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5 장 보 칙

제 18 조 (기부금) 창업한 교직원 등은 산학협력단에 기부금을 주식 또는 현금 등의 형태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 조 (의무) ①창업한 교직원 등은 창업활동에 의한 업무 및 학업 공백에 대하여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②창업한 교직원 등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창업활동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창업한 교직원 등은 창업활동으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0 조 (폐업) 창업한 교직원 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하기 1월 이전에 폐업계획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 (규정 위반과 처벌) 창업한 교직원 등이 이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단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징계요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 22 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4. 12. 22 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연구처를 통하여 창업한 교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교직원 창업지원 규정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